#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정복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13 발의연월일: 2024. 7. 16.

발 의 자:문정복・민병덕・최기상

박상혁 · 김준혁 · 백승아

문금주 · 김영호 · 송재봉

윤준병 • 한창민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,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·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2022년 1월부터 시행된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, 관 런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,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,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·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5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###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따른 학교"를 "따른 학교ㆍ기관"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해당하는 학교"를 "해당하는 학교·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     | 제2조(정의)                |  |  |
|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 "학교급식"이라 함은 제1조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제4조의 규정에 <u>따른 학교</u> 또 | <u>따른 학교·</u>          |  |  |
| 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         | 기관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2.・3. (생 략)             | 2.•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|  |  |
| 제4조(학교급식 대상) 학교급식은      | 제4조(학교급식 대상)           |  |  |
|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        | 해당하는 학교·기관             |  |  |
| 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한다.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 ~ 4. (생 략)           | 1. ~ 4. (현행과 같음)      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| 5.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|  |  |
| <u>5.</u> (생 략)         | 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 |  |  |